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1993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 이유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이 종전 32개항목에서 36개항목으로 증가 되었으며, 수질분석 방법이 옥안비색법. 적정법등에서 GC. AA를 이용한 정밀분석법으로 개정되어 검사기간의 대폭증가와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 검사기간 변경 : 현행 7 일 ⇒ 개정 14 일
- 검사항목 추가 및 수수료 변경
 - 카바릴 4,000 원
 - 1.1.1 - 트리클로로에탄 4,000 원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000 원
 - 트리클로로에틸렌 4,000 원
-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변경
 - 일반 음용수검사 수수료의 50 % 로 조정

근거 법령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 보건사회부령 제 897호('92. 12. 15)

기 타 : 조례안 사전예고 ('93. 7. 9 - 7. 29) 결과 제시된 의견 없음.

- 첨 부 :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 . 구조문 대비표
 3. 기타 참고 자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 (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업무) 제1항제2호중 '첨가물기구'를 '첨가물, 기구'로하고, '공중위생법에 음용수'를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명중 '시험처리기관'을 '시험처리기간'으로 하고, 수질관계란의 처리기간 '7일'을 '14일'로 한다.

[별표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음용수에 관한 시험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음용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균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1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7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다만,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 음용수 검사 수수료의 50%로 함.			

[별표 2] 제7호 음용수증정량시험중 '페니트로티온'뒤에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구	분	수 수 료	비 고
○ 카바릴		4,000	
○ 1.1.1 - 트리클로로에탄		4,0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000	
○ 트리클로로에틸렌		4,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3조 (업무) ① (생략)</p> <p>1. (생략)</p> <p>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u>첨가물기구</u>, 용기, 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측정물, 위생처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u>공중위생법에 음용수</u>, 수처리제,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 시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p> <p>3. - 6. (생략)</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제4조 (원장) ① (생략)</p> <p>② <u>소장</u>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원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6조 (검사. 시험의뢰) ① (생략)</p> <p>② <u>소장</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받아올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p>	<p>제3조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첨가물, 기구</u>----- ----- -----<u>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u>----- ----- -----</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 (원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원장</u>은 ----- -----</p> <p>제6조 (검사. 시험의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원장</u>은 ----- ----- -----</p>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시험용검체의뢰수량 및 <u>시험처리기간</u>			----- ----- ----- ----- [별표 1] 시험용검체의뢰수량 및 <u>시험처리기간</u>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수질관계	<u>7 일</u>	1. 물 3리터이상	수질관계	<u>14 일</u>	1. (현행과같음)
[별표 2] 6. <u>음료수에 관한 시험</u>			[별표 2] 6. <u>음용수에 관한 시험</u>		
구 분	수수료	비 고	구 분	수수료	비 고
정호수(각급학교 군부대 및 <u>군이하 지역소재)</u> ○ 세균학적 검사 4, 000 ○ 이화학적 검사 2, 000			음용수 검사 ○ 세균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1항 해당시험항목 수수료 액 합산) ○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7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 액 합산)		
간이상수도(각급학교 군부대 및 군이하 지역소재) ○ 세균학적 검사 4, 000 ○ 이화학적 검사 2, 000			다만, 각급학교, 군부대에 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 음용수 검사수수료의 50 %로 함		
상수도원수(각급학교 군부 대 및 군이하 지역소재) (보사부음용수기준28개항목) ○ 세균학적 검사 4, 000 ○ 이화학적 검사 34, 000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구 분	수수료	비 고	구 분	수수료	비고
기타(상업용정호수(지하수) 및 시지역소재 정호수등) ○ 세균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 7항 시험 항목 수수료액 합산) ○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 7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별표 2] 7. 환경분야에 관한 시험			[별표 2] 7. 환경분야에 관한 시험		
구 분	수수료	비 고	구 분	수수료	기타
음용수중 정량시험 ○ 세레늄 ○ 다이아지논 ○ 파라티온 ○ 말라티온 ○ 페니트로티온 ○ (신 설)	4,000 4,000 4,000 4,000 4,000		음용수중 정량시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카바릴 ○ 1.1.1.-트리클로로에탄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000 4,000 4,000 4,000	

참고자료

관 련 법 규 발 취

< 보건환경연구원법 >

제 8조 (수수료등)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

1992. 12. 15 보건사회부령 제897호

제2조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① 수도법 제18조 및 공중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에 의한 수도 및 공동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수질기준의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제3호에 사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카바릴은 0.07 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1.1.1 - 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보건사회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 503-7590 / 전송 503-7568

문시번호 읍관 65460 - 가

시행일자 1993.03.20 (3년)

수신 나 01-18

선결	☞		지		
접	일자	1993.3.23	시		
	시간				
수	번호	695	재		
처리과			공		
담당자			관		

제목 음용수의 수질검사기간 및 수수료 개정 지침

1. 음용수의 수질검사기간 (민원 처리기간) 및 검사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제2항 및 제8조의 제2항 규정에 외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그간의 많은 이견변화 (음용수의 수질기준 추기, 검사대상물량의 폭증) 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질검사기간과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고 있어 검사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시·도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어

3. 붙임과 같이 수질검사기간 및 수수료개정지침을 통보하니 이를 근거로 시·도 실정에 적절한 조례를 개정·운영하기 바랍니다. ✓

붙임 : 음용수의 수질검사기간 및 수수료 개정 지침 1부. 끝.

보건사회부장관

위생국장진길

음용수의 수질검사 기간 및 수수료 개정 지침

I. 목적

- '90년 이후 매년 음용수의 수질기준이 개정되어 추가되고 수질에 대한 관심고조로 검사대상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검사업무 어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검사기간 및 수수료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조례 개정시 동 지침을 참조함으로써 시·도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함

II. 음용수의 수질검사 기간

- 현행 시·도별 음용수 수질검사 기간은 시·도에 따라 7 - 15 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하수등에 대하여 일부 항목(시도에 따라 7 - 16항목)만을 검사할 때의 기간으로서 현행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이 37개인 점과 그 분석방법이 육안비색법, 적정법 등에서 GC, AA 를 이용한 정밀분석법으로 개정하게 됨에 따라 검사 소요시간이 대폭 증가됨.

따라서 검사기간 개정 시(별표 1) "식품·음용수등의 소요시간 및 처리기간 비교표" 를 참조할것

III. 음용수의 수질검사 수수료

- 현행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음용수와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동 규칙개정시 아래표의 같이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도로 규정할 계획이니 조례개정시 동 수수료를 참조할 것

구 분	수 수 료 (원)
· 정성시험 1항목당 (색도, 탁도, 냄새, 맛, PH)	1,300
· 정량시험 1항목당 (정성시험 이외의 전항목)	4,000
· 일반세균	4,400
· 대장균군	5,000

[별표 1]

식품·음용수의 소요시간 및 처리기간 비교

(단위 : 시간)

내역		구분	식품	침기물	용기포장	음용수		
						과기	발생	만제
검 시 기 간	검사항목	2 - 13 (평균 6)	6 - 12 (평균 8)	2 - 7 (평균 4)	7	16	37	
	검사소요시간	8 - 40 (평균 24)	12 - 36 (평균 24)	8 - 40 (평균 24)	**** 10.5	**** 28	134.5	
	부적합항목 재검사소요 시간	8	8	8	4	8	16	
	검시결과 검토 및 성적서 작성	3	3	3	2	3	4	
	결재·발송	4	4	4	4	4	4	
	계	39 (평균)	39 (평균)	39 (평균)	20.5 (3일)	45 (6일)	158.5 (20일)	
현행 처리 기간	국립보건원*	27일	20일	23-32일	-	-	** 18-32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	-	-	-	*** 7-30	

* 점수·발송에 소요되는 기간 2일 포함

** 음용적부시험(8항목)은 18일, 음용수 수집기준(37항목)은 32일 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7 - 15일 이며 서울은 30일 임

**** 대장균군이 부적합할 경우 7일이 소요됨(일요일 포함)